법무법인(유) 화우
YOON & YANG

LEGAL UPDATE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3-7호
Dec. 2023

보험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사례

-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관한 최근 판례 및 시사점-

1. 사안의 개요

-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,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**보험자대위의 범위**가 문제된 사안
  - A는 원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A 소유의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(이하 '본건 계약')
  -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B(A의 어머니)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(이하 '본건 사고')
  - 본건 사고 발생 당시 피보험자를 B로 하는 4개 보험회사(원고, C, D, E)의 5개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이 체결되어 있었고[1] 본건 사고에 대하여 각 같은 비율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
  - 4개 보험회사들은 '원고가 단독으로 B에게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되, 이에 대하여 나머지 보험자들이 원고에게 각자 체결한 보험계약 1건마다 1/5의 비율로 계산한 분담금을 지급하는 것'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음(이하 '본건 합의')
  - 원고는 B의 치료비로 의료기관에 총 195,429,680원을 지급하였고, C, D, E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총 96,766,040원[2]의 분담금을 지급받고 피고 차량 책임보험자로부터 2,000만 원을 지급받음
  -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B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78,663,640원(195,429,680원 - 116,766,040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
  - 원고, C, D 보험회사가 각 1개의 특약을, E 주식회사가 2개의 특약을 각 체결
  - C 12,811,710원, D 30,893,010원, E 53,061,320원

[1] 원고, C, D 보험회사가 각 1개의 특약을, E 주식회사가 2개의 특약을 각 체결

[2] C 12,811,710원, D 30,893,010원, E 53,061,320원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

2. 법원의 판단

- 1심 법원은 피해자 B의 과실비율을 50%로 판단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을 97,714,840원(= 195,429,680원 × 50%)으로 산정하였음. 원고의 보험자대위 범위는 위 손해배상채권액 97,714,840원에서 다른 보험사들이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분담금 전액(116,766,040원)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가 대위행사할 대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(서울남부지방법원 2018. 2. 20. 선고 2015가단202791 판결)

- 2심 법원은 보험자대위 범위에 관한 중복보험자들 사이의 합의가 있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액에서 이를 각 중복보험자의 분담비율(보험계약별 1/5)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 지급된 분담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가 대위행사할 대상이 일부 남아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[3] (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5. 9. 선고 2018나53892 판결)

- 상고심인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19다237586 판결(이하 '본건 판결')은,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,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의무자를 상대로 **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**을 행사할 수 있고, 다만 그 **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**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후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가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원심의 인용 금액을 넘는다고 판단하면서 상고를 기각함. 주요 설시이유는 아래와 같음

  -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상법 제6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**다른 중복보험자를 상대로**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
  - 이는 피보험자에 대한 **배상의무자를 상대로**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, 그 중복보험자는 각 청구권의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양자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음. 다만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지급된 보험금 중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될 뿐임
  -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B에게 지급된 보험금에서, 원고가 분담금을 수령하여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상응하는 비율임.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

    I. **[원고가 중복보험자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총 분담금]** 보험약관에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보험금 175,429,680원(=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195,429,680원 – 피고 보험자가 지급한 2,000만 원)

    II. **[중복보험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총 분담금] 총 96,766,040원**

    III. **[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권의 한도] 77,714,840원**(=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 97,714,840원 – 피고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2,000만 원)

    IV. **[원고가 실제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권의 범위] 34,847,764원**[= 보험자대위권의 한도 77,714,840원 × (175,429,680원 - 96,766,040원) / 175,429,680원)]

[3] 2심 법원에서 원고가 대위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1심 법원이 판단한 97,714,840원에서 피고 차량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2,000만 원을 공제한 77,714,840원으로 산정되었음. 또한 각 보험회사별로 손해배상채권액의 1/5에 해당하는 15,542,968원(단, E 보험회사는 2개의 특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/5인 31,085,936원)을 한도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여, 18,274,226원을 인용함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

3. 시사점

-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, 보험자대위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이 관련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선례가 없었고, 하급심의 판단도 일치되어 있지 않았음
- 본건 판결은 이러한 경우 보험자대위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**보험금에서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**

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.